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

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GPC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

자격인증기준

(Rev.3)

㈜ 지피씨인증원

(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)

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서문

GPC는 IAF(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)의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인정기관인 IAS(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)로부터 ISO/IEC 17024에 기반하여 개인인증기관(Personnel Certification Body)으로 인정을 취득하였습니다.

GPC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개인인증스킴 개발을 통해 심사원분들의 미래를 보다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

이 문서는 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(이하 GPC)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의 자격 인증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GPC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으로 자격 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서에서 정의하는 인증스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

심사원 신청 및 기타 질문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Contact GPC

- GPC Homepage: www.gpcert.org

- GPC Mail: info@gpcert.org

- GPC 인증책임: 김재권 과장 (Tel: 02-6749-0710)

- GPC 인증업무: 허 현 주임 (Tel: 02-6749-1162)

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1. 심사원 등급

(1) 내부심사원 (Internal Auditor)

- 경영시스템 내부심사원은 GPC로부터 승인받아 내부심사 시 심사팀의 일원으로 심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.

(2) 심사원보 (Provisional Auditor)

- 경영시스템 심사원보는 GPC로부터 승인받아 심사팀의 일원으로 심사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정의한다.

(3) 심사원 (Auditor)

- 경영시스템 심사원은 GPC로부터 승인받아 심사팀의 일원으로 심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.

(4) 선임심사원 (Lead Auditor)

- 경영시스템 선임심사원은 GPC로부터 승인받아 심사팀장으로 심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.

(5) 검증심사원 (Senior Auditor(=Lead Auditor))

- 경영시스템 검증심사원은 GPC로부터 승인받은 선임심사원이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 심사원 인증 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에 입회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다.

2. 등급에 따른 자격 요건

(1) 내부심사원

-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
- 총 3년 이상의 업무 경력

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.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(신청 표준 관련하여 품질 혹은 환경 분야 경력 최소 1년 이상)

- 심사원 교육 수료증 또는 내부심사원 교육 수료증
- 최근 3년 이내 내부심사 5회 이상, 최소 15M/D 이상의 내부심사이력
- GPC의 지식 및 인성시험 합격

(2) 심사원보

- 고등교육 졸업 이상의 학력
- 심사원 교육 수료증
- GPC의 지식 및 인성시험 합격

(3) 심사원

- 고등교육 졸업 이상의 학력
- 총 5년 이상의 업무경력 (신청 표준 관련하여 품질 혹은 환경 분야 경력 최소 2년 이상)
- 심사원 교육 수료증
- 최근 3년 이내 20M/D 이상의 심사이력 (이 중 8M/D 이상의 On-site 심사 및 3회 이상의 심사 포함)
- GPC의 지식 및 인성시험 합격

(4) 선임심사원

- 고등교육 졸업 이상의 학력
- 총 5년 이상의 업무경력 (신청 표준 관련하여 품질 혹은 환경 분야 경력 최소 2년 이상)
- 심사원 교육 수료증
- 최근 3년 이내 35M/D 이상의 심사이력 (이 중 15M/D 이상의 선임심사원으로서 심사이력 및 최소 8M/D 이상의 On-site 심사 및 3회 이상의 심사 포함)
- GPC의 지식 및 인성시험 합격

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.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(5) 검증심사원

- 고등교육 졸업 이상의 학력
- 총 10년 이상의 업무경력
 (신청 표준 관련하여 품질 혹은 환경 분야 경력 최소 5년 이상)
- 공인된 개인인증기관에서 선임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후에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선임심사원으로서 15M/D 이상의 심사이력 (이 중 최소 8M/D 이상의 On-site 심사 및 3회 이상 심사 포함)
- 현재 공인된 개인인증기관에서 선임심사원 자격 유지
- GPC 선임심사원 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
- GPC의 지식 및 인성시험 합격

**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

(1) 업무경력

- 최종학력이 고등교육 졸업인 경우 총 경력은 5년 이상이 요구되지만 학사 졸업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요구되는 총 경력은 4년으로 경감된다. (품질 혹은 환경 분야 경력 최소 2년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)
- 신청 표준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2년 이상의 품질 혹은 환경 분야 업무경력의 경우 수행한 업무가 신청 표준의 경영시스템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기술하거나 또는 증빙자료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.
- 신청 표준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기타 이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의 검토 후 수용여부가 결정된다.(예: 지도, 심사 이력)

(2) 교육 수료증

- 수용 가능한 교육 수료증은 공인된 개인인증기관 혹은 개인인증기관으로부터 지

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.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정받은 연수기관을 통해 발행된 교육 수료증에 한정된다.

- 기본적으로 40시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요구하지만 전환 및 자격확대 교육 과정 의 경우 기존에 수료했던 정규 교육 과정 수료증을 추가로 증빙하여야 한다.
-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교육 수료증만 수용 가능하다.
- 공인된 개인인증기관 혹은 그로부터 지정받은 연수기관에서 발행되지 않은 교육 수료증의 경우, 교육과정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 혹 은 교육 교재 등을 제출함으로써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.

(3) **GPC** 시험 합격증

- 전환 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시험은 면제 가능하다.

(4) 심사이력

- 최초, 사후, 갱신 심사 모두 인정 가능하다.(단, 최초 심사는 최소 1회 이상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한다.)
- 1,2,3 자 심사 모두 수용 가능하다.
- 신청 표준과 관련된 유사 심사 이력은 동등성 평가를 통해 수용여부가 결정된다.
- 심사 1 회에 한하여 최대 5 M/D까지 수용이 가능하다.

3. 신청방식

(1) 적격성 평가 방식 (최초)

적격성 평가 방식이란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자료로 평가하는
 방식으로 정의한다.

(2) 검증 방식 (최초)

- 검증 방식이란 심사원 인증 신청자가 자격요건 중 심사이력 20 M/D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심사원 인증 신청자를 위한 현장 입회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. 심사원 인증 신청자는 GPC에서 인정한 검

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.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증심사원과 대동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검증심사원이 입회하여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.

(단, 검증방식 심사원 인증 신청자도 최근 3년 이내 10M/D 이상의 심사 이력(심사 수행 및 심사 대응)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. 이는 심사원으로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입증하기 위함이다.)

(3) 전환 신청

- 공인된 기관에서 취득한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. (이때 GPC로부터 발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 만료일 + 1년으로 적용된다.)

(4) 승급 신청

- 심사원 승급 신청은 심사원보>심사원, 심사원>선임심사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검증심사원으로 승급은 불가능하다.
- 최초 GPC로부터 발행된 인증서의 발행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승급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은 변경되지 않는다.

4. 자격 유지

(1) 사후 유지 신청

- 특별한 요구조건 없이 연간 유지 비용 지불 시 연장된다.

(2) 갱신 신청

- 모든 등급에 한하여 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주기에 맞춰 갱신 신청이 이뤄져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후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. 심사원보 및 내부심 사원을 제외한 등급에게 요구되는 증빙자료로는 3년 간 최소 10M/D 이상의 심사이력 (최소 3회 이상의 심사) 및 16시간 이상의 지속적 개발 활동(CPD (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)) 이력이 제출되어야 한다.

Global Personnel Certification Co., Ltd.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(CPD 활동은 교육, 세미나, 워크샵 또는 기타 전문적 개발 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자료로 입증되어야 한다.)

- 내부심사원은 3년간 최소 3M/D 이상의 내부 심사이력(최소 3회 이상의 심사)이 요구된다.
- 선임심사원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소 1번 이상의 선임심사원으로서 심사이력이 요구된다.
- 검증심사원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소 1번 이상의 선임심사원으로서 심사이력과 검증활동 이력이 요구된다.

5. 인증심사원 자격 정지 및 취소

(1) 정지

- (a) 정지 사유
- 인증 유지 또는 인증 갱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때
- 고객이 인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때
- 고객의 정지요청이 있을 때
- 인증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
- 심사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
- (b) 정지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정지는 보류될 수 있다.
- (c) 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(d) 인증을 정지당한 심사원은 즉시 인증을 증명하는 문서, GPC와 인정기구 등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.
- (e) 정지의 원인이 해결되면 GPC의 승인 후 인증을 회복시킬 수 있다.

(2) 철회

- (a) 철회사유
- 인증 유지 또는 인증 갱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때



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8 (대륭테크노타운7차), 501-1호 Tel: +82 2 6749 0710 Fax: +82 2 6749 0711

> e-mail: info@gpcert.org Web site: www.gpcert.org

- 고객이 인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때
- 정지의 원인이 된 문제가 GPC가 정한 기한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
- 만료기간 내에 인증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
- 고객의 철회 요청이 있을 때
- 심사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
- (b) GPC는 고객이 15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수용한다.
- (c) GPC는 15일 이내 응답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.
- (d) 고객은 즉시 인증문서와 마크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.
- (e) 고객이 재인증을 원할 경우, GPC는 신규 인증으로 진행한다.
- (f) 고객이 철회된 인증에 대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, GPC는 철회된 사유가 해결되었음을 신청서 비고란에 확인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보장한다.